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30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유경준·강기윤·윤영석

김태호 • 권명호 • 김용판

조수진・송석준・이 용

박성중 · 강민국 · 백종헌

황보승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는 통상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회법」의 경우에도 안건 등을 부의하는 주체는 의장, 위원장 및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정부에 대하여는 '제출'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출'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제9항, 제15조의2제1

항 및 제46조).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부의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부의할"을 "제출할"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부의안건의"를 "의회제출안건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할"을 각각 "제출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 ⑧ (생 략)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	9
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u>부의하여야</u> 하며,	<u>제출하여야</u>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	
게 알려야 한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
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절차) ①
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	
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	
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u>부</u>	<u></u>
<u>의할</u>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u>출할</u>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u>부의안건의</u> 공고) 지방자	제46조(<u>의회제출안건의</u> 공고)
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u>부</u>	
<u>의할</u>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제출할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	
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u>부</u>	

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출할
다.	